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방부 (군인연금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 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 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0조)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3. 3. ~ 2020. 4.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령안과 함께 추진됨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급여청구서, 급여액산정서,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 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 기여금의 납입상황
4.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참가부대별 전투참가기간
6. 전상·공상·사상별 입원 구분
7. 탈영기간, 실종기간, 포로기간, 정직기간 또는 휴직기간

8.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급여의 조정 사유 유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사유 유무

10.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 유무

11.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복무기간

②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금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담당자 및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조(연금청산 신청) 연금의 청산 신청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준용한다.

제4조(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는 해당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상이연금의 청구) ① 영 제33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상이연금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장해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상이등급의 판정방법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신체의 장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장해부위의 구분과 장해계열은 별표 1과 같다.

③ 상이등급은 장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장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개월 이내에 장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장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장해

에 대하여 판정한다.

④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상이등급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1.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2.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영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에 대하여 종합상이등급에 따라 하나의 상이등급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1호(제1급)마목·바목 및 제2호(제2급)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3호(제3급)마목 및 제4호(제4급)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1호(제1급)사목·아목, 제2호(제2급)라목 및 제4호(제4급)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 제5호(제5급)바목 및 제7호(제7급)카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에 따른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상이등급을 그 대상자의 상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상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상이등급의 판정은 장해 관련 급여의 청구 시 제출된 장해진단서 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2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따른다.

제8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의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의한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신체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 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제9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분할연금 등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군재정관리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4. 제 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장애보상금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본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세부기록서 및 장애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례급

여, 영 제45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특례급여 외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

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례급여 사용계획서 1부
2.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한 군인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③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급여 사용계획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받은 자는 특례급여를 사용한 후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 ① 재해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아니하던 유족이 법 제10조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똑같

이 나누어 받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해 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증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상이유족연금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청구)

① 법 제38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영 제49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① 법 제39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마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의 첨부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망보상금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동순위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해당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前) 청구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의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7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재해보상기록상황의 전산관리) ①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그 밖의 신분상의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급여의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급여의 수급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제21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제22조(서식) ① 영 제75조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와 유족대표자 변경 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

지 제8호서식

5. 영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6. 다음 각 목의 경위조사서: 별지 제10호서식
 - 가. 영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상·질병경위조사서
 - 나. 영 제33조에 따른 장해경위조사서
 - 다.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
7.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8.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9.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10. 다음 각 목의 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 가. 영 제37조에 따른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지급 청구서
 - 나. 영 제38조에 따른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지급 청구서
 - 다.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상이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
 - 라. 영 제55조에 따른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및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

11. 영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재난부조금 청구서: 별지 제24호서식

13. 영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망조위금 청구

서: 별지 제25호서식

14.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별지 제2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군인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체의 장애부위의 구분과 장애계열 (제6조 제2항 관련)

1. 신체의 장애부위 구분

- 가. 눈은 안구의 좌 또는 우, 눈꺼풀의 좌 또는 우
- 나. 귀는 속귀등의 좌 또는 우, 귓바퀴의 좌 또는 우
- 다. 코
- 라. 입
- 마. 머리, 얼굴, 목
- 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 사.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 아. 체간은 척추와 그 밖의 체간골
- 자.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 차.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2. 장애계열

부위		기질적 장애	기능적 장애
눈	안구(좌 또는 우)		시력장애 운동 또는 조절기능 장애
	눈꺼풀(좌 또는 우)	결손장애	운동장애
귀	속귀등(좌 또는 우)		청력장애
	귓바퀴(좌 또는 우)	결손장애	
코	외부 코	결손장애	비호흡 기능장애
입		치아장애	씹는 기능장애
			언어 기능장애
머리, 얼굴, 목		흉터장애	
신경·정신		신경장애	
		정신장애	
흉복부장기		흉복부장기 장애	
		외부 생식기 장애	

	척추	변형장애	기능장애
체간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애[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	
팔	팔(좌 또는 우)	결손장애 변형장애	기능장애
	손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애	기능장애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장애	기능장애
		변형장애	
		단축장애	
	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애	기능장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제7조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장애

- 1) 시력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視標)를 사용하는 시력표(試視力表) 등에 의한 시력 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2) 굴절이상(屈折異常)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교정하면 부등상시증(不等像視症: 좌우 각막에 투영되는 상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생겨 두눈보기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 3) 영 별표 3에서 "실명"은 안구를 상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光覺有)]로 한다.
- 4) 기타

가) 눈 바로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안전수동(眼前手動)]는 시력 0.01 이하에 해당한다.

나) 눈앞에서 손가락 수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안전수지(眼前手指)]로 눈으로부터 50센티미터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1에 해당하고, 눈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2에 해당한다.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애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閾値: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에 의하여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 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 데시벨 이하이면 이를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간주한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해서는 급성 음향성 청각기관 장애(急性 音響性 聽覺器官 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다)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상이등급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라) 직업성난청의 치유시기는 해당 군인이 직업성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애에 대한 등급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2) 상이등급 판정기준: 청력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급판정표 1(순음청력치 기준)

다른 한 귀의 청력 손실 \ 한 귀의 청력 손실	9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이상	50데시벨 이상	40데시벨 이상	정상
90데시벨 이상 (청력을 완전히 잃음)	제4급 다목	제5급	제6급 다목	제7급 다목	제7급		
80데시벨 이상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제5급	제6급 다목	제7급	제7급			
70데시벨 이상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제6급 다목	제7급	제7급 다목				
60데시벨 이상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제7급 다목	제7급					

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50데시벨 이상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움)	제7급						

비고: 청력 역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가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한다.

나) 등급판정표 2(순음청력치와 어음명료도 기준)

다른 한 귀의 청력 손실		30퍼센트 이하		50퍼센트 이하	70퍼센트 이하		정상
		80데시벨 이상	50데시벨 이상	50데시벨 이상	50데시 벨 이상	40데시 벨 이상	
30퍼센트 이하	80데시벨 이상	제4급 다목					
	50데시벨 이상		제6급 다목				
50퍼센트 이하	50데시벨 이상			제7급 나목			

3. 입의 장애

가. 말하는 기능의 장애

-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란 입술소리·잇몸소리·입천장소리·목구멍소리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1)에 따른 4종의 음성 중에서 2종의 어음을 발음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철음(綴音: 자음과 모음이 어울려서 이루어진 소리)기능의 장애가 있어 언어만을 사용해서는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나. 음식을 씹는 기능의 장애

- 음식을 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교합(咬合)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

폐운동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영 별표 3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란 유동식(流動食) 이외에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영 별표 3에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미음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삼킴 장애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음식을 씹는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인정한다.
- 영 별표 3에 따라 조합이 되어 있지 않은 말하는 기능장애 및 음식을 씹는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각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으로 준용등급을 인정한다.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

- 영 별표 3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신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영 별표 3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신의 장애,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3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애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대뇌국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애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3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3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나. 척수의 장애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5)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다.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

라. 조화운동못함증·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1) 고도의 조화운동못함증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뚜렷한 조화운동못함증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3) 중등도의 조화운동못함증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이 명백하게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적용한다.

2) 작열통(灼熱痛: 사지에 외상을 입었을 때에 그 말단부가 불에 타는 듯이 따갑고 아픈 통증)에 대해서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바. 그 밖의 특징적인 장애

외상성 뇌전증의 치유 시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증상이 안정된 때로 하고, 상이등급은 발작 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 시의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 또는 고도의 정신기능의 장애로 일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 때문에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3)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1회 이상의 의식장애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의 특징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전간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5. 흉터의 장애(머리·얼굴·목 등)

가.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3에 따른 "외모"란 머리·얼굴·목과 같이 일상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팔, 다리는 제외)

2) 영 별표 3에 따른 "외모에 뚜렷한 흉터"는 다음과 같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크기를 말한다.

가) 얼굴의 경우에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이하 "흉터"라 한다) 또는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없어짐

나)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흉터, 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모(線)양의 흉터(이하 "선모양흉터"이라 한다) 또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의 조직 함몰

다) 목에 있어서는 손바닥크기 이상의 흉터

3) 상처자국·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 눈썹,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에는 흉터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기타

가)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없어짐으로 두부함몰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뇌의 압박으로 신경증상이 있는 때에는 외모의 흉터장애에

대한 등급과 신경장애에 대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나) 2개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선상흔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서 1개의 상처자국 또는 선상흔으로 보일 때에는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화상 치료 후 흑갈색으로 변하거나 탈색으로 인한 흰색 반점으로서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외모의 흉터의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6. 흉부부장기 등의 장애

가. 흉부장기의 장애

1) 영 별표 3에서 "흉부장기의 장애"란 심장·심장막(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3) 고도의 흉부장기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4) 흉부장기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나. 복부장기의 장애

복부장기의 상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

다. 신장장해

- 1)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 신우루(腎盂瘻), 요관피부문합(尿管皮膚吻合: 요관피부연결), 요관장문합(尿管腸吻合: 요관장연결)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 2)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 신우증(신장염), 물공팔증이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해

-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마. 요도협착

요도협착으로 신장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해로 간주하여 상이 등급을 결정한다.

바. 생식기장해

양쪽 고환 또는 난소가 결손된 사람은 제7급마목을 인정한다.

7. 척추 등의 장해

가. 척추의 장해

- 1) 영 별표 3에서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척추뒤굽음 또는 20도 이상의 척추옆굽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 2) 영 별표 3에서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단, 고정술만 시행한 경우에는 2년마다 재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후유신경증상과 유합술(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하중기능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구(콜셋트 등)를 사용하더라도 일상생활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인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8.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일반원칙

팔 및 손가락의 장해는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락의 장해(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의 장해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격 등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락의 장해를 말한다.

나. 팔의 장해

- 1) 영 별표 3에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어깨관절에서 어깨뼈와 위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위팔뼈가 절단된 사람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위팔뼈와 노뼈 및 자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 2) 영 별표 3에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손목관절에서 노뼈 및 자뼈와 손목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 3에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장착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팔신경열기(상완신경총)가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관절이 완전 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의 사람으로 한다.
- 5) 인공골두(人工骨頭)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유증상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 6) 영 별표 3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위팔뼈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은 사람 또는 노뼈와 자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 1) 같은 팔에 둘 이상의 기질적 장애(결손장애, 기형장애)가 남은 경우와 같은 팔에 결손장애와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진 등급을 준용한다. 다만, 기능장애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애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애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는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9.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일반 원칙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는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의 장애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격계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를 말한다.

나. 다리의 장애

- 1) 영 별표 3에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엉덩관절의 경우에는 불기뼈와 넓적다리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엉덩관절과 무

릎관절과의 사이(넓적다리)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무릎관절에서 넓적다리뼈와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 2) 영 별표 3에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下腿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목말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 3에서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발목뼈(발꿈치뼈·목말뼈·주상골(舟狀骨)과 3개의 계상골을 말한다)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중족골과 발목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 3에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 전부가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가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 5) 영 별표 3에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 6) 영 별표 3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 7) 영 별표 3에서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넓적다리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정강이뼈와 종아리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8)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유증상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다. 발가락의 장애

- 1) 영 별표 3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3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末節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원
위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나)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근위
지관절(엄지발가락은 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
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
을 말한다.

라. 준용등급 결정

1) 같은 다리에 2개 이상의 기질적 장애(결손장애, 기형장애)가 남은 경우와
같은 다리에 결손장애와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는 종합상이등급을 적용하여
판단하되, 한 다리의 장애정도에 따라 정해져 있는 등급을 준용한다.

2)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애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애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결정한다.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 <제정 2020. 6. 11.>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4조의9제2항 관련)

구분 관절명		측정방법	측정각도(도)	운동가능영역(도)
척추	목(경부)	전굴(前屈)	45	90
		후굴(後屈)	45	
		좌굴(左屈)	45	90
		우굴(右屈)	45	
		좌회전(左回轉)	80	160
		우회전(右回轉)	80	
	등허리(흉부)	전굴	90	120
		후굴	30	
		좌굴	30	60
		우굴	30	
		좌회전	30	60
		우회전	30	
어깨관절		펴기(신전)	40	190
		굽히기(굴곡)	150	
		벌리기(외전)	150	180
		모으기(내전)	30	
		안쪽돌리기(내회전)	40	130

	바깥쪽돌리기(외회전)		90	
팔꿈치관절	펴기		0	150
	굽히기		150	
	안쪽돌리기		80	160
	바깥쪽돌리기		80	
손목관절	펴기		60	130
	굽히기		70	
손허리손가락관절 [중수지절관절(中手指節關節)]	엄지손가락	펴기 굽히기	0 60	60
	둘째손가락	펴기 굽히기	0 90	90
	가운뎃손가락	펴기 굽히기		
	넷째손가락	펴기 굽히기		
	새끼손가락	펴기 굽히기		
	엄지손가락	펴기 굽히기		
	엄지손가락	펴기 굽히기	0 80	80
제1지관절[第1指關節]	둘째손가락	펴기		100

제2지관절[第2指關節, 원위지절간관절(遠位指節間關節),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굽히기	0 100	
	가운뎃손가락	펴기 굽히기		
	넷째손가락	펴기 굽히기		
	새끼손가락	펴기 굽히기		
제2지관절[第2指關節, 원위지절간관절(遠位指節間關節), 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둘째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70
	가운뎃손가락	펴기 굽히기		
	넷째손가락	펴기 굽히기		
	새끼손가락	펴기 굽히기		
	엄지손가락	펴기 굽히기		
	엄지손가락	펴기 굽히기		
영덩관절	펴기		30 100	130
	굽히기			
	모으기		20 40	60
	벌리기			
	안쪽돌리기		40	90

	바깥쪽돌리기		50	
무릎관절		펴기 굽히기	0 150	150
발목관절		펴기 굽히기	20 40	60
발허리발가락관절	엄지발가락	펴기 굽히기	50 30	80
	둘째발가락	펴기 굽히기	40 30	70
	가운뎃발가락	펴기 굽히기	30 20	50
	넷째발가락	펴기 굽히기	20 10	30
	새끼발가락	펴기 굽히기	10 10	20
발가락관절	엄지발가락	펴기 굽히기	0 30	30
제1지관절[第1指關節, 근위지절간관절(近位指節間關節), 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둘째발가락	펴기 굽히기	0 40	40
	가운뎃발가락	펴기	장애 정도는 수동적일지라도	

	굽히기	조금이라도 운동이 가능하면 정상으로 취급하고, 완전강직 상태만 장애로 판정한다.
넷째발가락	펴기 굽히기	
새끼발가락	펴기 굽히기	

[] 유족대표자 선정서
[] 유족대표자 변경 선정서
[]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사망한 군인과의 관계
	동순위 유족의 위임 내용	[] 유족대표자 선정 [] 유족대표자 변경(변경 사유:) []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해제 사유:)	
위임자	성명	대표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대표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전화번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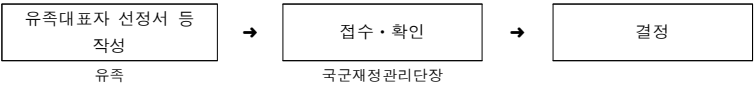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2.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대표자와 위임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대표자의 동순위 유족의 위임내용란의 [] 안에 "√"표시를 하십시오.
- 동순위 유족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적으십시오.
-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자의 성명란에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사망한 군인과의 관계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급 여부 [] 수급 [] 미수급		연금 종류 [] 군인 퇴역(상이)연금(. . .) [] 공무원 (조기)퇴직연금(. . .) [] 사학 (조기)퇴직연금(.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사망한 군인과의 관계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급 여부 [] 수급 [] 미수급		연금 종류 [] 군인 퇴역(상이)연금(. . .) [] 공무원 (조기)퇴직연금(. . .) [] 사학 (조기)퇴직연금(.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사망한 군인과의 관계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급 여부 [] 수급 [] 미수급		연금 종류 [] 군인 퇴역(상이)연금(. . .) [] 공무원 (조기)퇴직연금(. . .) [] 사학 (조기)퇴직연금(. . .)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청구인 제출서류	1.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증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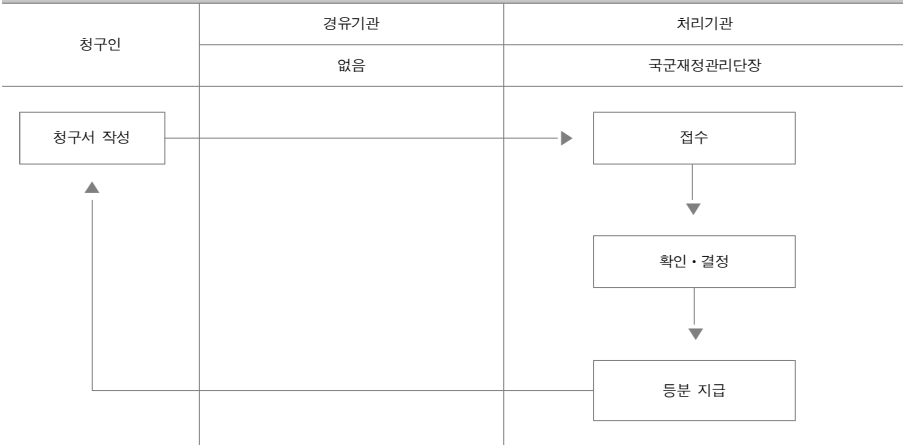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 상이
[] 상이유족 연금청산 신청서
[] 순직유족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금증서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출국예정 연월일 또는 국적상실 연월일	
	청구 사유 [] 국적상실 [] 해외이주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의 청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해외이주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나. 여권 사본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국적상실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본증명서 1부 나. 여권 사본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국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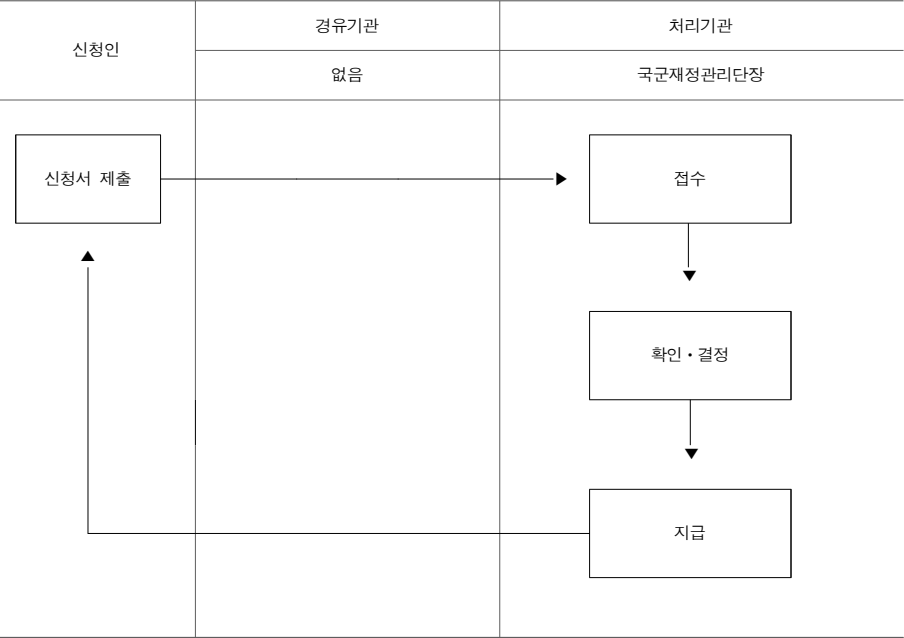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상이·상이유족·순직유족 중 해당 사항 앞의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2. 신청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신청인의 연금증서번호란은 연금증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4. 신청인의 청구 사유란은 해당 사항의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5.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6. 신청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실제 거주하는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직장 주소			

환수금 분할 신청 내용	총 급여환수금	일시납부금액	분할신청금액	분할신청횟수	월납입일
	원	원	원	()회	()일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국군의무사령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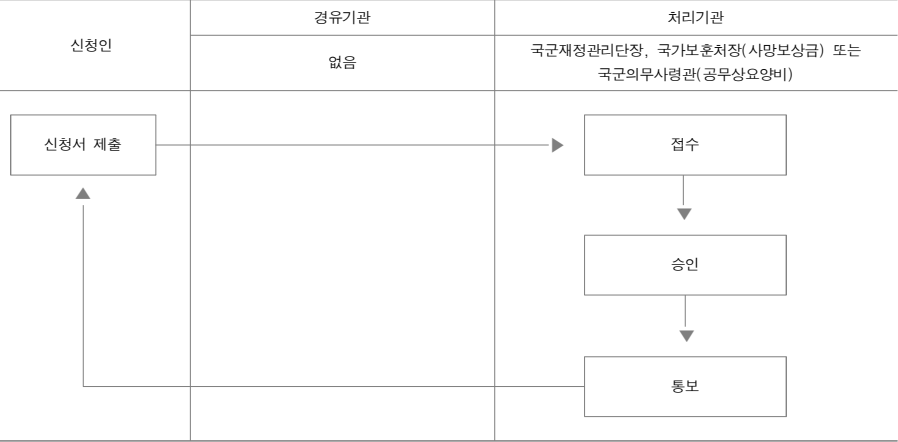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후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신청인의 실제 거주하는 주소란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2.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총 급여환수금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3.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일시납부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4.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분할신청금액란에는 환수금의 납부를 분할로 신청하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5.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분할신청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는 분할횟수를 적으십시오.
가.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나.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다.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6.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월납입일란에는 매월 입금할 수 있는 날짜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 대리인 선임장
[] 대리인 해임장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연금번호	
	거주국명	거주기간	
	출국일	출국사유	

선임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수급권자와의 관계	선임기간	

해임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선임 (해임) 사유	선임 사유	[] 해외이주	[] 승선	[] 국적상실
		[] 그 밖의 사유		
	해임 사유	[] 사망	[] 영주귀국	[] 하선
		[] 그 밖의 사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해임)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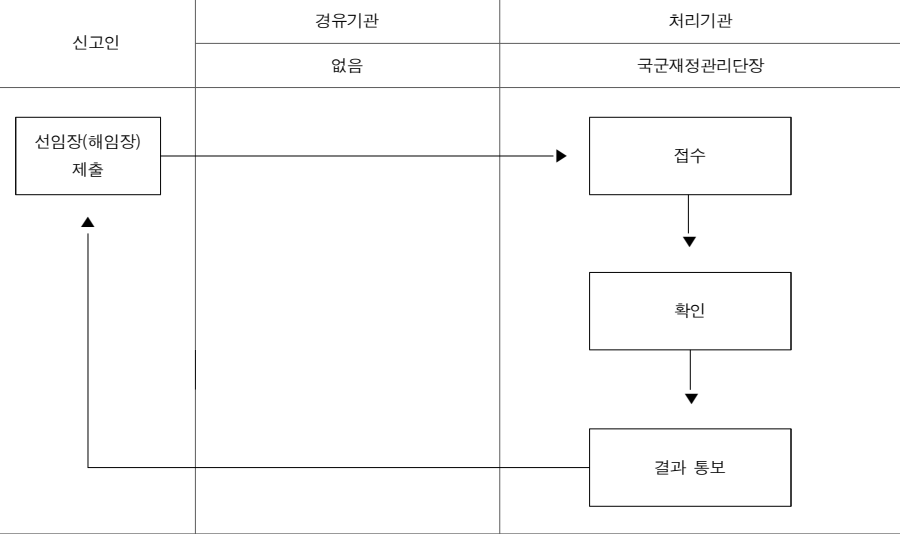
<뒤 쪽>

첨부서류	없음
------	----

작성방법

신고인과 선임대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측시
연금 수급권자 Pension Beneficiary	성명 Full Name (한글) (영문)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자택 전화번호 Home number	휴대전화번호 Mobile number	
	주소 Address	전자우편 E-mail	
	연금종류 Type of Pension [] 퇴역 a retired [] 유족 a bereaved [] 상이 a disabled		
	연금번호 Pension No.	거주기간 Length of residence	
국적 관계 Nationality	[]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 시민권자 Citizen	[] 그 외 1년 이상 거주자 A person living abroad for more than a year	
	취득일 Date of permanent residency or citizenship granted	국명 Name of nation	번호 Citizenship No.
신분 관계 Identity	구금 및 재판관계 Detention and trial	날짜 Date	사건내용 Case
	재혼 여부 Remarriage	재혼일 Date of Remarriage	배우자 성명 Name of spouse
	사망일 Date of death		
가족 관계 Family	관계 Relati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Mailing Address
국내 대리인 An agent in Korea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 Korean ID No.	
	자택 전화번호 Home number	휴대전화번호 Mobile number	
	주소 Address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 및 그 동거가족이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19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Compensation Act, this is to notify that the statements above are true.

날짜 Date 년(yy) 월(mm) 일(dd)

신고인 Full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위 신고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번호:)

The information above is true and officially confirmed. (Confirmation Number:)

날짜 Date 년(yy) 월(mm) 일(dd)

()국 주재공관장
The Korean Consul in ()

직인

국군재정관리단장 Commander of Financial Management Corps 귀하

작성방법		
1. 연금수급권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The address section should be filled with the postal address (residential address).		
2. 신분관계란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신상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The identity section should include information changes to the pension beneficiary.		
처리절차 Processing steps		
신고인 Applicant	경유기관 Pass-through agency	처리기관 Processing agency
	주재공관장 The Korean Consul	국군재정관리단장 Commander of Financial Management Corps
신고서 제출 Submission of Application	사실 확인 Confirmation	접수 Receipt
		신상 변동 여부 확인 Confirmation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 영문 작성 요망(Please fill out the form in English)

※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아래의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연금 수급권자 Pension Beneficiary	성명 Full Name (한글) (영문)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택 전화번호 Home number	휴대전화번호 Mobile number		
	주소 Address	전자우편 E-mail		
	연금종류 Type of Pension [] 퇴역 a retired [] 유족 a bereaved [] 상이 a disabled			
	연금번호 Pension No.	거주기간 Length of residence		
국적 관계 Nationality	[]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 시민권자 Citizen [] 그 외 1년 이상 거주자	취득일 Date of permanent residency or citizenship granted 국명 Name of nation 번호 Citizenship No. A person living abroad for more than a year		
	구금 및 재판관계 Detention and trial	날짜 Date	사건내용 Case	사건번호 Case No.
신분관계 Identity	재혼 여부 Remarriage	재혼일 Date of Remarriage	배우자 성명 Name of spouse	
	사망일 Date of death			
가족관계 Family	관계 Relati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Mailing Address
국내대리인 An agent in Korea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 Korean ID No.	
	주택 전화번호 Home number		휴대전화번호 Mobile number	
	주소 Address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 및 그 동거가족이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19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Compensation Act, this is to notify that the statements above are true.

날짜 Date 년(yy) 월(mm) 일(dd)

신고인 Full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국군재정관리단장(Commander of Financial Management Corps) 귀하

는(은) 본 공증인 앞에서 위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다.

공증인 는(은) 20__년 __월 __일 이를 인증한다.

On this __day of __, 20__, I, ____, a notary public, hereby certify that ____, who personally appeared and duly swore before me, signed and acknowledged that the preceding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Notary Public

PRINTED NAME	TELEPHONE NO	SEAL
COMMISSION NO	ADDRESS	
EXPIRY OF COMMISSION	SIGNATUR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종질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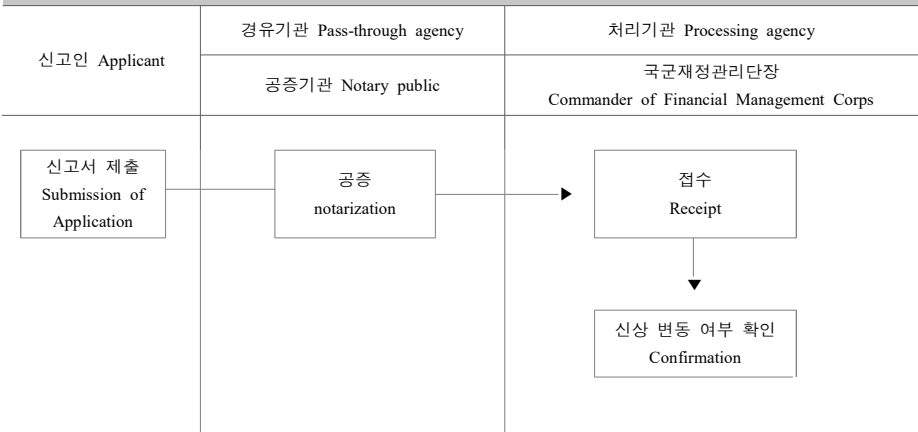
<뒤쪽>

첨부서류 Supplementary file attached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주사실 확인서 1부 notarial document or residence certificate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연금수급권자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The address section should be filled with the postal address (residential address).
- 신분관계란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신상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The identity section should include information changes to the pension beneficiary.

처리절차 Processing steps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기재란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 퇴직시 신청했던 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기재		
변경 신청 사항	[] 상이연금에서 퇴역연금으로 변경		
	[] 상이연금에서 퇴역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순직유족연금에서 순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변경		
	[]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순직유족연금으로 변경		
	[] 기타(에서 으로 변경)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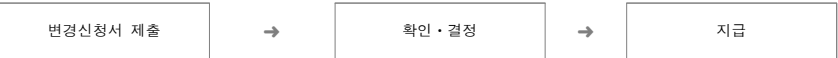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미 수령한 급여를 급여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
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퇴직시 신청했던 급여수령계좌에서 변경시만 제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급여의 종류 중 청구하려는 급여 앞의 [] 안에 "V" 표시를 하십시오.
2.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4.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청구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요양 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계급	군번	소속 부대명
	부상명·질병명	부상·질병 연월일시	부상·질병 장소
	평소 건강상태 [] 건강 [] 요주의 [] 지병	제3자 가해 여부 [] 가해자 있음 [] 가해자 없음	
	요양비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지급 시 필요하오니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 기간	입원기간	외래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도 치료기간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 사실을 확인하여 송부합니다.

()군 제 부대장 직인

담당부서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년 월 일
-------	----	----	-----------	----------------------

국군의무사령관 귀하

첨부서류	청구인	1.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간이 명확하게 기록된 진단서 1부 2.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3. 그 밖에 민간병원 진료기록 등	수수료 없음
	소속 부대의 장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1부 2.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상·질병 경위조사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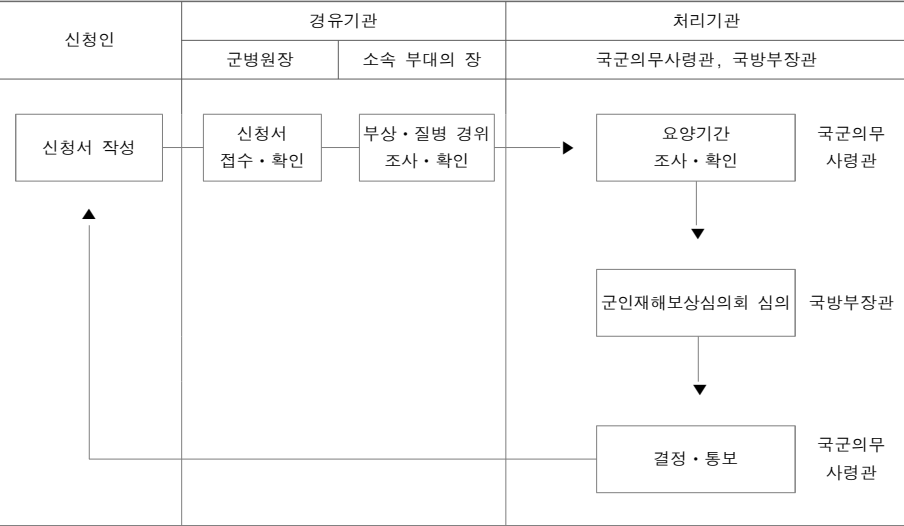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종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요양군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부상명·질병명은 진단서상의 부상명 또는 질병명을 적으십시오.
3. 부상·질병 연월일시는 질병의 성질상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시작까지 쓰고, 부상·질병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4. 평소 건강상태는 건강진단 결과통보서에 적힌 바에 따라 해당하는 난에 표시하십시오.
5. 요양기간란에는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요양기간을 적되,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도 치료기간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1. 위 경위조서서는 연대장급 이상 소속 부대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 조사서에 기록된 사항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시 공무상 부상·질병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적으십시오.

2.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알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대상 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군번
	소속 부대명		담당 직무

발생 경위	부상·질병 연월일시	부상·질병 장소
	사망 연월일시	사망 장소
	부상·질병·사망 당시 하고 있었던 일	경위 별첨

가해자	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용주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보험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보험회사명	보험 종류	

손해 배상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수령 연월일
	보험	부담액	수령 연월일
	가해자	부담액	수령 연월일

조사자	직책	계급	성명	(인) 전화번호:
-----	----	----	----	-----------

250 251 252

()군 제 부대장 직인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1. 부상·질병경위서, 장애경위서 또는 사망경위서(사망확인조서) 1부 2.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손해배상대상기관 및 배상금액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인 경우에는 부상·질병 앞의 []에 "V" 표시를 하고, 상이연금·장애보상금 청구 시에는 장애 앞의 []에 "V" 표시를 하며, 순직유족연금·사망보상금 청구 시에는 사망 앞의 []에 "V"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군인의 담당 직무란에는 업무분장표상의 담당 직무를 적으십시오.
3. 발생 경위란에는 소속 부대에서 조사한 부상·질병·장애·사망 발생 경위를 쓰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가해자란은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5. 가해자의 보험가입 여부란은 가입·미가입 중 해당 사항의 [] 안에 "V"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사고와 관련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명과 보험 종류를 써야 합니다.
6. 국가·지방자치단체·보험회사 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담액과 수령연월일을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소속 부대의 장	경유기관	처리기관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각군 참모총장(사망보상금) 또는 국군의무사령관(공무상요양비)


```

graph TD
    A[경위서 제출] --> B[조사·확인]
    B --> C[접수·확인]
    C --> D["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
    D --> E[통보]
    E --> A
  
```

공무상요양 []기간연장 []추가질병·부상 승인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요양 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에 [] 아니요
	주소		
	계급	군번	소속 부대명
기승인 사항	최초 요양승인번호		최초 요양승인 연월일
	승인받았던 부상명·질병명		

신청 내용	연장신청 요양기간	입원기간	외래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도 치료기간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병 · 부상	부상명·질병명	요양기관명
추가질병·부상 사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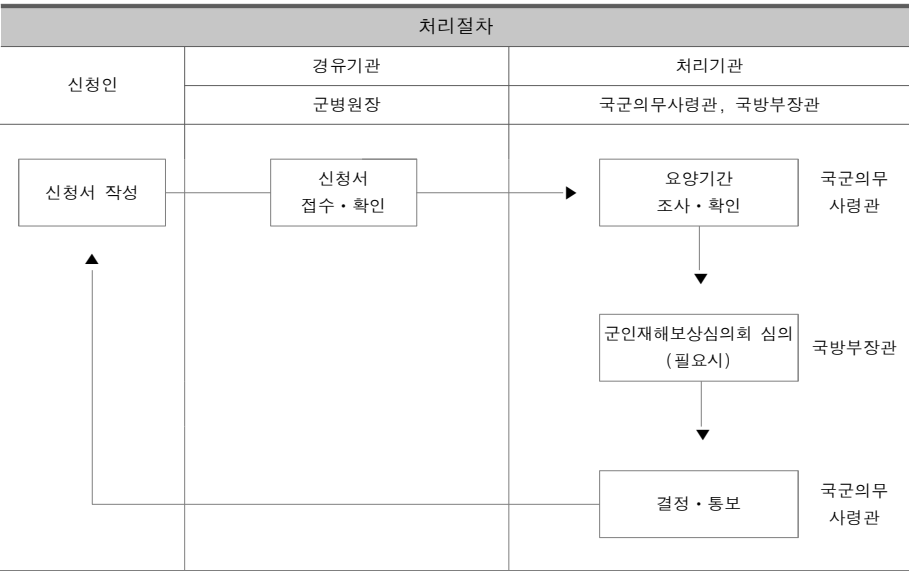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공동 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군의무사령관 귀하

첨부서류	1.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간이 명확하게 기록된 진단서 1부 2.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3. 그 밖에 민간병원 진료기록 등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요양군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기승인사항의 최초 요양승인번호란, 최초 요양승인 연월일란에는 최초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적힌 요양승인번호와 요양승인연월일을 적으십시오. 3. 기승인사항의 승인받았던 부상명·질병명란에는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또는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결정서에 적힌 부상명·질병명을 적으십시오. 4. 신청내용의 연장신청 요양기간란에는 추가로 요양할 기간으로서 진단서에 적힌 바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내용의 추가질병·부상의 부상명·질병명란에는 승인을 받으려는 부상명·질병명(기승인 질병·부상명 제외)을 적고,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질병·부상'이란 공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질병이 최초의 공상 신청 이후 추가로 발견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그 공무상의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6. 신청내용의 추가질병·부상 사유는 최초 재해 당시 누락된 사유나, 기승인 질병·부상과 상당한 인과관계로 발생한 사유 등을 진단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재요양 승인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요양 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계급		군번	소속 부대명
	부상명·질병명		부상·질병 연월일시	부상·질병 장소
	기 요양승인번호		재요양 질병·부상명	
	요양비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지급 시 필요하오니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요양 신청	입원기간		외래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도 치료기간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동의	공동 이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하여 송부합니다.

년 월 일		
-------------	--	--

()군 제 부대장

직인

담당부서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국군의무사령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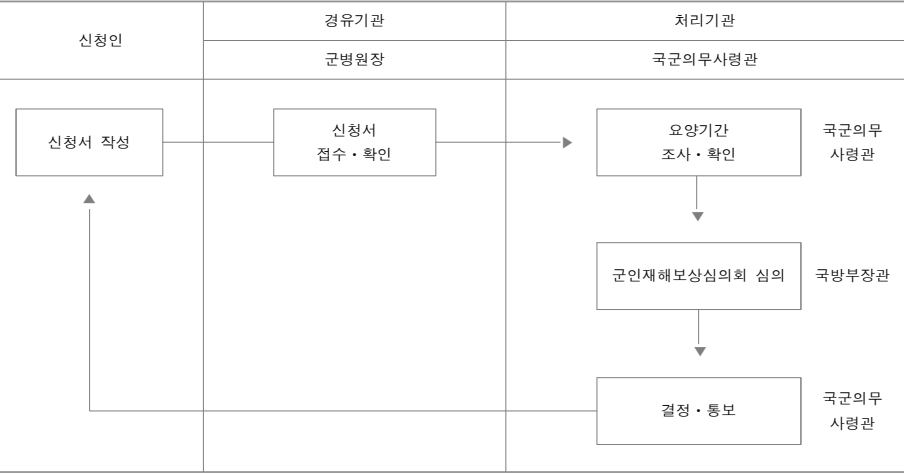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1.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1부 2. 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진단서 1부. 3.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3조(공무상요양 승인) 및 제24조(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의 사본 4.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재요양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의 사본 5. 그 밖에 민간병원 진료기록 등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요양군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부상명·질병명은 진단서상의 부상명 또는 질병명을 적으십시오.
3. 부상·질병 연월일시는 질병의 성질상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시각까지 쓰고, 부상·질병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4. 평소 건강상태는 건강진단 결과통보서에 적힌 바에 따라 해당하는 난에 표시하십시오.
5. 요양기관의 기관명과 주소란에는 부상일·질병일 이후 실제 요양을 한 요양기관을 적고 요양한 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적으십시오.
6. 요양기간란에는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요양기간을 적되, 요양기관별로 각각의 요양기간을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상이연금 청구서

※ 1. 이 청구서는 상이연금을 청구하실 때 사용하시는 서식입니다.
2.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청구인 기재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은행			
	계급·호봉		군번	
	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형 확정 (형명:)(확정일: . . .)(형량:)	
	퇴직 당시 소속 부대명		퇴직 연월일	
학자금 대부	[] 있음 [] 없음	미납액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소속 부대 기재란	공무상 부상·질병	부상·질병 장소		장해 상태		
		제3자 가해사실 [] 있음 [] 없음		상이등급 급 항		
		공무상 요양사실 [] 있음(승인번호) [] 없음				
	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형 확정 (형명:)(확정일: . . .)(형량:)				
	대부사항 [] 있음 [] 없음	대부종류	대부액	상환액	미납액	미납액 상환방법
		전세대부				[] 일시상환 [] 분할상환
확인자	인사담당자	계급	성명	(인)	전화번호: () -	
	()군 제 부대장 직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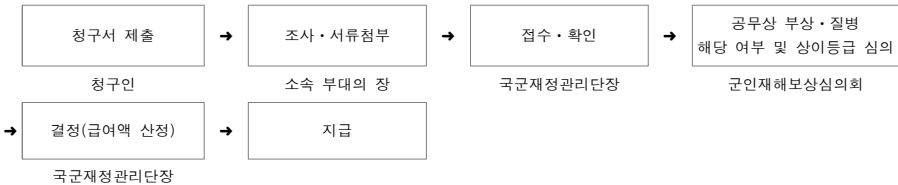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첨부서류	청구인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소속 부대장	1. 별지 제10호서식의 장해경위조사서 1부 2.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1부	

작성방법

-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청구인 기재란의 형벌 사항란과 소속 부대 기재란의 형벌 사항란에는 "[] 있음, []없음" 중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하고,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형벌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진행 중, 형사재판 계류 중, 형 확정 등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 부대장 기재란의 형벌 사항란을 작성하는 경우 소속 부대의 인사담당자는 형벌사항을 따로 조사·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소속 부대 기재란의 공무상 부상·질병란은 제3자의 가해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의 [] 안에 "V" 표시를 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장해경위조사서에 가해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소속 부대 기재란의 대부 사항란은 "[] 있음, []없음" 중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한 후 대부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 대부액, 상환액 및 미납액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미납액 상환방법은 청구인이 희망하는 상환방법을 확인하여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연금증서번호	기존에 결정된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 상이연금등급	장해의 호전 또는 악화 이유 별지 기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이연금등급의 개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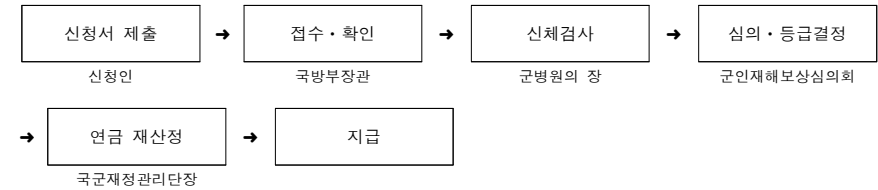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현재의 장해 정도가 명확히 적힌 진단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신청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신청인의 장해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이유는 별지로 작성하되, 상이연금 청구 시 제출한 진단서상의 장해와 비교하여 현재 장해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청구서
[] 급여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 급여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청구인	소속하였던 부대명 군 제 부대	퇴직 당시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퇴직 연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오
	주소	청구사유 확정일	
	청구 사유 [] 1.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청구(연금번호:) [] 2.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청구(연금번호:) [] 3.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차액 청구(연금번호:) [] 4. 불기소 처분을 받음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남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40조제4항 및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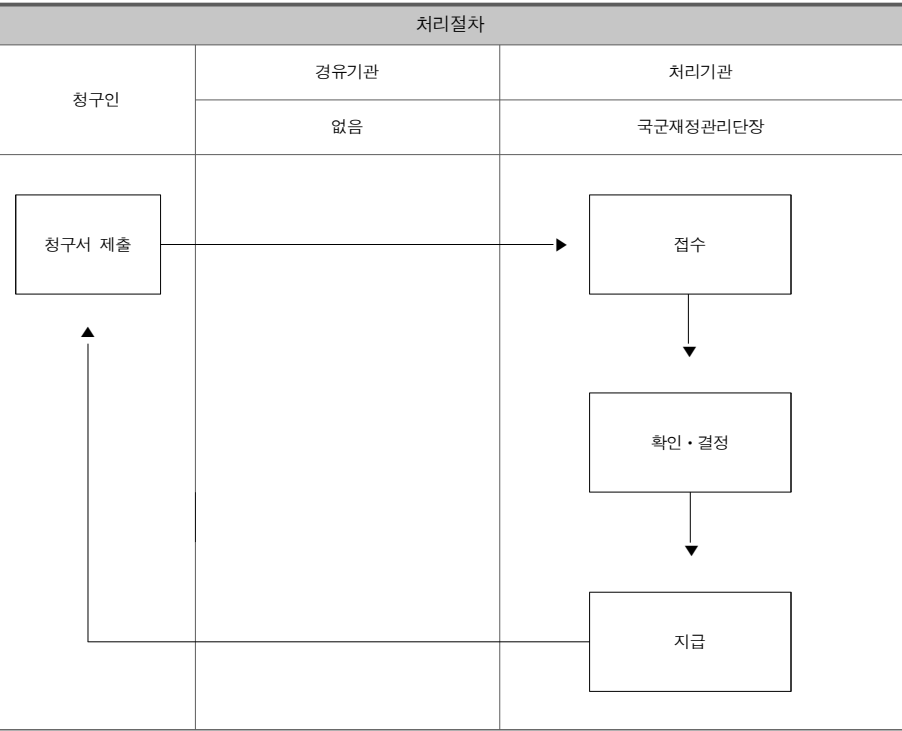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작성방법
1. 청구 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앞의 [] 안에 "V" 표시를 하고, 청구 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수급권 상실로 인한 차액 앞의 [] 안에 "V" 표시를 하며, 청구 사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상이연금 차액 앞의 [] 안에 "V" 표시를 하고, 청구 사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및 잔여 퇴직수당 앞의 [] 안에 각각 "V" 표시를 하십시오. 2.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청구인의 청구사유란은 해당 사항의 [] 안에 "V" 표시를 하시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5.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청구인 첨부서류	1.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 사본(청구 사유 제4호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2.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청구 사유 제5호 또는 제6호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 재취업
[] 재퇴직 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상이연금증서번호		
	사유 [] 재취업(재임용) [] 재퇴직		

신고 내용	재취업· 재퇴직	구분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재취업·재퇴직 연월일
		기관명	직급·직책
		합산신청 여부 (공무원 등 재/퇴직 기관에서의 신청 여부) [] 신청했음 [] 신청하지 않았음	근무부서 전화번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재취업·재퇴직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하여 보냅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직인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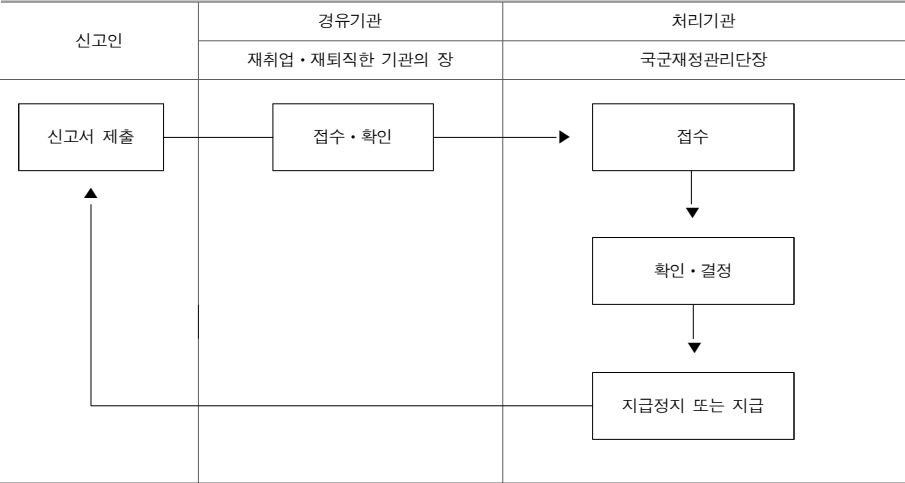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신고인의 연금증서번호란은 연금증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2. 신고내용의 재취업·재퇴직 연월일란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날짜를 적으십시오.
 - 가. 재취업(재임용)의 경우: 상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다시 임용(취임)된 날
 - 나. 재퇴직의 경우: 상이연금수급자가 위 재임용기관에서 다시 퇴직(퇴임)된 날

처리절차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연금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연금증서번호
	주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e-mail
신청 내용	사유 [] 퇴직(폐업) [] 소득변동		소득 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변동일(퇴직일·폐업일)		변동 소득금액
	세부사항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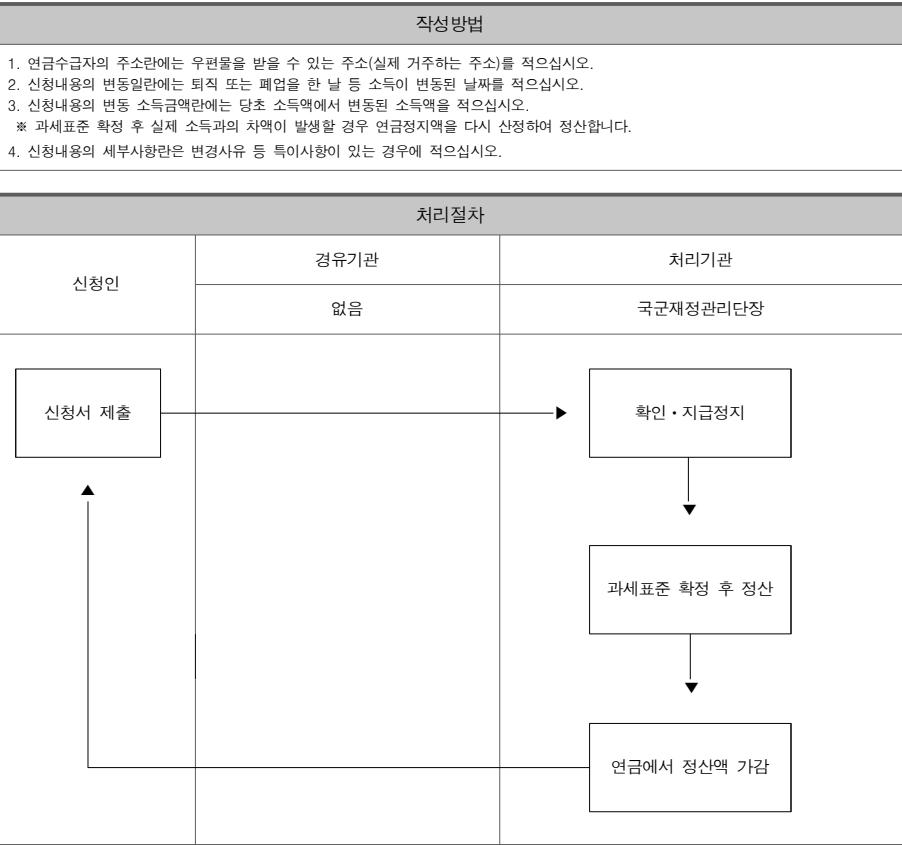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등 해당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봉계약서 사본 등 해당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사업소득의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휴업사실 증명원 등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근로소득의 경우: 퇴직(경력) 증명서, 인사발령문 등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장애보상금 청구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기재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부상·질병 당시 소속 부대		계급·호봉
	군번		입영일(임용일)
	전역일		전역근거
	제3자 가해사실 [] 있음 [] 없음		부상일·질병일/부상·질병장소
급여제한 사유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 수령			

군병원 기재란	신체장애등급	장애보상금 등급
------------	--------	----------

확인자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 참모총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하여 보냅니다.

년 월 일

()군 참모총장

직인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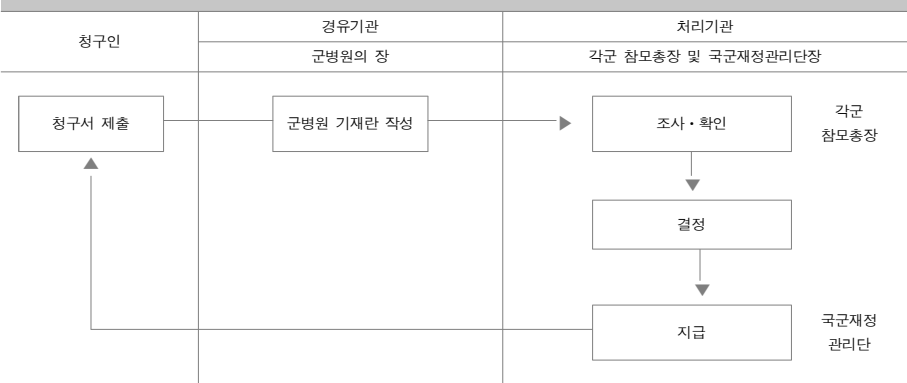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청구인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군병원장	1. 진단세부기록서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장해경위조사서 1부	

작성방법

-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청구인 기재란의 급여제한 사유란에는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신체장애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나. 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 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라. 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절차



특례급여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청구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급 여부 [] 수급 [] 미수급	연금 종류 [] 공무원(조기)퇴직연금 [] 군인 퇴역(상이)연금 [] 사학(조기)퇴직연금				
	학자금 대부	[] 있음 [] 없음	미납액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사망자와의 관계					
	동순위 수급권자	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해유무
		1				[] 있음 [] 없음
		2				[] 있음 [] 없음
3					[] 있음 [] 없음	
4				[] 있음 [] 없음		
※ 장해유무는 자녀인 경우만 기재						

사망한 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사망일	사망 장소
	사망구분 [] 상이연금 수급 중 사망	[] 군 복무 중 사망 [] 공무상 사망 심의 신청 [] 공무상 사망 심의 미신청

소속 부대 기재란	제3자 가해사실 [] 있음 [] 없음					
	대부사항	대부종류	대부액	상환액	미납액	미납액 상환방법
	[] 있음	전세대부				[] 일시상환
	[] 없음					[] 분할상환
	확인자	인사담당자	계급	성명	(인) 전화번호: () -	
()군 제 부대장 직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항,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청구인 제출서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급여 외의 급여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7.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8.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급여	1. 특례급여 사용 계획서 1부 2.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한 군인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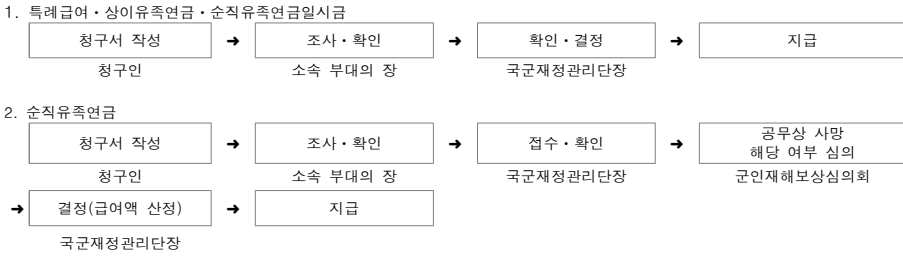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청구하려는 해당 급여 앞에 "V" 표시를 하십시오.
-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청구인의 퇴역·퇴직연금 등 수급 여부란은 청구인이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서 퇴직(퇴역)연금을 수급 중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난입니다.
- 청구인의 동순위 수급권자란은 아래의 순위를 확인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적으십시오.
* 유족의 우선순위: ①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 ②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손자녀 ③ 부모 ④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조부모 ※ 배우자는 위 유족 중 우선순위자와 동순위이며,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 소속 부대 기재란의 대부사항란은 "[] 있음, [] 없음" 중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한 후 대부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종류, 대부액, 상환액 및 미납액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미납액에 대한 상환방법은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의 경우: 청구인이 희망하는 상환방법을 확인하여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해당 사항의 [] 안에 "V" 표시
나. 특례급여·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경우: 일시상환의 [] 안에 "V" 표시

처리절차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연금수급권자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연금종류 [] 상이연금 [] 상이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		
	연금번호		상실일
	상실사유 [] 사망 [] 재혼 [] 친족관계 종료 [] 연금수급권자 연령 19세 도달 [] 연금수급권자 장애 상태 해소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연금수급권자와의 관계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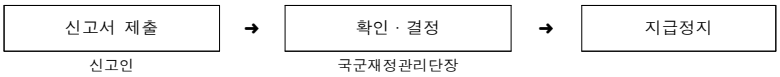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연금수급권자가 19세에 도달한 경우: 없음 4. 연금수급권자의 장애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알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관계 - 사망군인의 () - 수급권소멸자의 ()	수급권 이전사유 [] 동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 선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 1년 이상 행방불명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급 여부 [] 수급 [] 미수급	연금 종류 [] 군인 퇴역(상이)연금 [] 공무원 (조기)퇴직연금 [] 사학 (조기)퇴직연금				
	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무
동순위 수급권자	1				[] 있음 [] 없음
	2				[] 있음 [] 없음
	3				[] 있음 [] 없음
	4				[] 있음 [] 없음
※ 장애유무는 자녀인 경우만 기재					

수급권 소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연금증서번호		사유 발생일	
	수급권 이전 사유 [] 사망 [] 재혼 [] 친족관계 종료 [] 자녀 또는 손자녀의 19세 도달 []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해소 [] 1년 이상 행방불명			
사망한 군인	소속하였던 부대명		복무연수	
	계급		군번	

「군인 재해보상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
2000
2005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청구인 제출서류	1. 수급권 이전사유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수급권 이전사유가 제1호 외의 사유인 경우 가. 사망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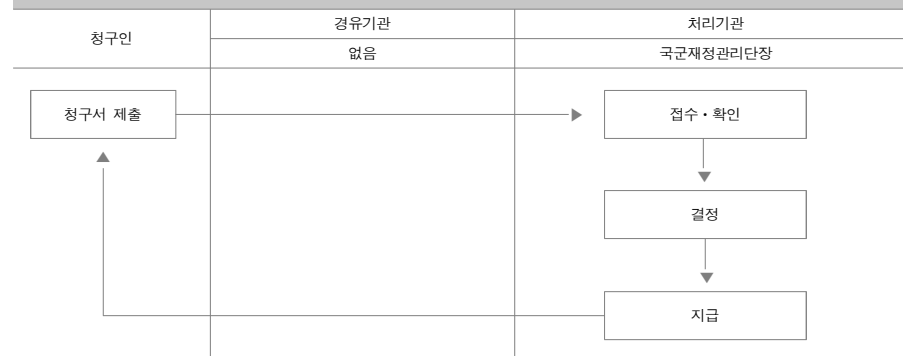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2.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청구대상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청구인의 연금수급 여부는 청구인이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서 청구인의 퇴직연금을 수급하는지를 해당 년에 "V" 표시하십시오.
5. 청구인의 동순위 수급권자인 아래의 순위를 확인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적으십시오.
 - * 유족의 우선순위 ①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 ②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
 - ※ 사망으로 시달린 군인이 부양하던 손자녀 ③ 부모 ④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조부모
 - ※ 배우자는 위 유족 중 우선순위자와 동순위이며,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처리절차



사망보상금 청구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사망한 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청구인과의 관계
	사망 당시 계급·호봉	군번
	사망보상금 지급 구분 [] 전사 [] 특수직무순직 [] 공무상 사망	
	제3자 가해사실 [] 있음 [] 없음	외국파견 기간 중 사망 여부 [] 외국근무 중 [] 국내근무 중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	소속 부대
	복무구분 [] 병역의무 [] 직업군인	
급여제한 사유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금 수령 []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 수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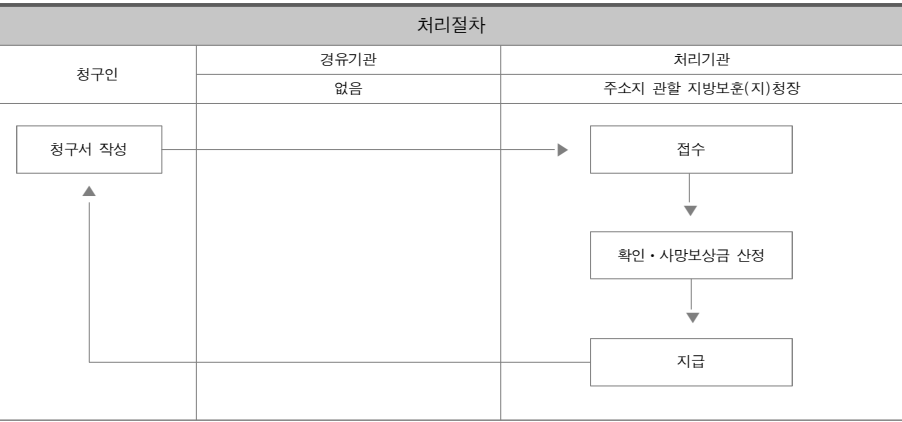
()지방보훈(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청구인 첨부서류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마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의 제출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실명확인통장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사망한 군인의 급여제한사유란에는 해당하는 [] 안에 "V"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부조금 청구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에 [] 아니요
	주소		
	계급·호봉	군번	소속 부대명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재난 주택	주택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인과의 관계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재난발생일
	주택 소재지	

재난 내용	주택 총면적		재난면적	
	m ²		m ²	
	재난 종류		재난정도	
	[] 화재 [] 홍수 [] 호우 [] 설해 [] 풍해 [] 해일 [] 고의에 의한 재난 [] 그 밖의 재난		[] 완전소실·유실·파괴 [] 1/2 이상 소실·유실·파괴 [] 1/3 이상 소실·유실·파괴	
	국가·지방자치단체부담 동일급여 수령 여부	[] 수령 (지급기관명: [] 미수령	, 금액: 원)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 제 부대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하여 보냅니다.

년 월 일

()군 제 부대장

직인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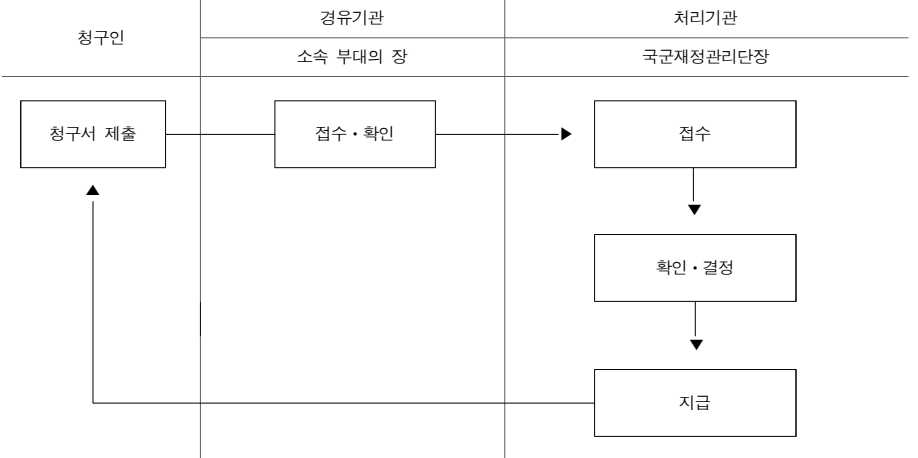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피해상황확인서 1부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 청구인의 계급·호봉란에는 재난발생일 현재의 계급·호봉을 적으십시오.
-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실명확인통장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재난주택의 주택소재지란에는 재난주택의 주소를 적으십시오.
- 재난내용의 주택총면적란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주택총면적을, 재난면적란에는 피해상황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에 적힌 재난면적을 적으십시오.
- 재난내용의 국가·지자체부담 동일급여 수령 여부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사유로 인한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를 해당되는 [] 안에 "V" 표시를 하시고, 수령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관명과 금액을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사망조위급 청구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알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청구인 기재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		은행	계좌번호
	계급			군번
	사망자 성명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사망자와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의 ()	
	다른 군인의 동일급여 청구 여부	[] 해당 (소속 군: , 성명: , 관계:) [] 해당 없음		

소속 부대 기재란	사망 당시 계급·호봉		임용연월일	
	소속 부대명		가족 중 군인	
	국가·지방자치단체부담 동일급여 수령 여부	[] 수령 (지급기관명: [] 미수령	, 금액: 원)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100 100 100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 제 부대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하여 보냅니다.

고
로
의

()군 제 부대장

직인

담당부서명:

답당자 설명:

전화번호: ()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청구인 첨부서류	1.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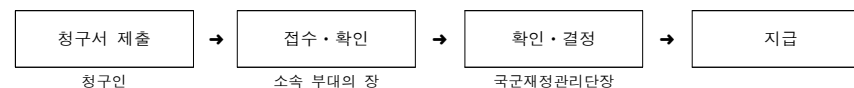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수령 금융회사 등은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실명확인통장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청구인 기재란의 다른 군인의 동일급여 청구 여부란에는 지급대상 군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동일사망자에 대하여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다른 군인의 동일급여 청구 여부를 확인한 후 적으십시오.
 5. 소속 부대 기재란의 사망 당시 계급·호봉란에는 반드시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해당 군인의 계급·호봉을 적으십시오.
 6. 소속 부대 기재란의 국가·지치체부담 동일급여 수령 여부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사유로 인한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 안에 "√" 표시를 하고, 수령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관명과 금액을 적으십시오.
- ※ 해당 소속 부대장은 청구서를 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지급대상 군인이 2명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선순위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권자 순위(「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 참조)

사망자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순위	비고
군인의 - 배우자 - 부모 - 배우자의 부모	해당 군인	* 수급대상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해당 군인에게 지급
군인	배우자 장래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제1순위: 배우자 제2순위: 장래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가.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나.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다.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장래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인 군인에게 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군인에게 지급하며,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순위자에게 지급

처리절차



심사 청구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대상군인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대상 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속 부대명		계급·군번		
결정 통보	처분 연월일		문서번호		
심사 청구 이유	별지 기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군의무사령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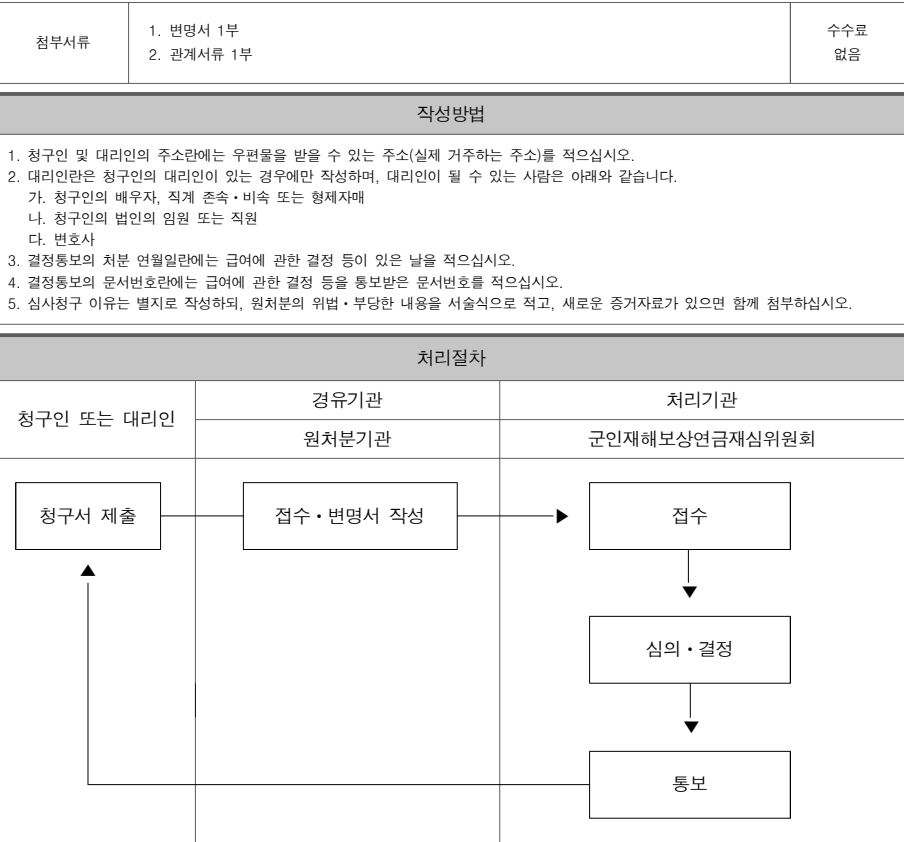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심사청구 이유서 1부 2. 관계증거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변명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냅니다.

년 월 일

()장 직인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인연금과	
연 락 처	(02) 748 - 6672